

##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

**제1조(약관의 적용)**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(이하 '이 예금'이라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.

**제2조(예금과목)**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, 보통예금으로 합니다. <개정 12.12.3>

**제3조(가입대상)**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,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. <개정 12.5.03, 12.12.3, 14.8.20, 14.11.21, 15.9.1, 17.7.10 >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
2.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
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5. <삭 제>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
7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 수급권자
8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권자

**제4조(입금제한)**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**제5조(거래제한)**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
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
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,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(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)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.

**제6조(이율적용 및 이자결산)**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「저축예금 특약」,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 <개정 15.9.1>

**제7조(세제혜택)**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<개정 15.9.1>

**제8조(수수료 혜택)**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,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②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